

인천지방법원 2015. 6. 10 선고 2015가단215426 판결 [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청구]

전 문

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6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1,307,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6. 24.부터 2004. 9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975 구상금 사건 별지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

청구
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.

판사정원석

별지